#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45호 )

# 심 사 보 고 서

1997. 11.

총 무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19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1. 26

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7. 11. 26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에 의한 농촌지도소장, 과장 등의 정원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○ 농촌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한다.(안 제3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에 의한 별표 제3의 2호에 의하면 농촌지도소의 소장 및 과장에 대한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하조례를 보완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고성군 농촌지도소 직제개편 계획은

● 답 : 내무부, 농림부 승인 사항이며 현재는 계획없음.

## 6. 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 : 1997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